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높은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A-1(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A-1(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A-1(주식)
2. 집합투자기구 종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4.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2015년 8월 6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년 8월 7일
7.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4 조좌
8.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가능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서면문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본점 및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홈페이지 (www.schrode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간이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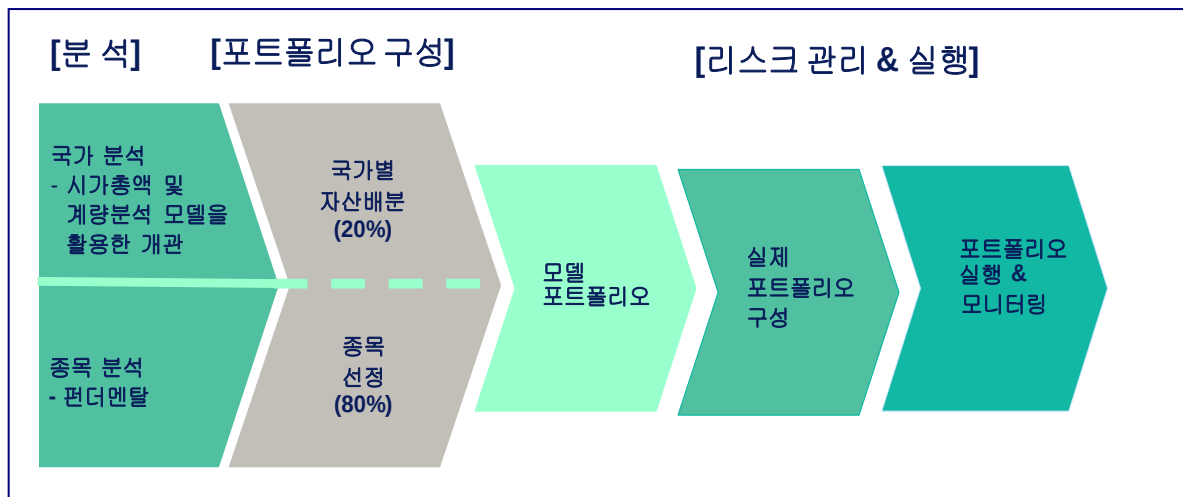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브릭스 국가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슈로더 브릭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을 최대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세부 운용전략 (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

브릭스 국가별 투자비중은 브릭스 국가별 가중평균 시가총액방식을 기본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슈로더의 다양한 자산배분 모델, 가치, 환율, 모멘텀, 성장, 위험 및 이자율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한 계량적 분석모델과 시장 및 지리적/정치적 요인 등을 감안한 비계량적 분석모델 등을 활용하여 국가별 비중 및 자산배분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중 업종 및 종목별 투자는 각종 리서치자료를 바탕으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 다양한 계량지표에 근거하여 업종별 자산배분 및 종목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국가별, 업종별 및 종목별 투자배정은 정기적인 분석 및 기업탐방을 통해 재조정되며 이러한 재조정은 집합투자자산의 투자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위험 관리

• 위험관리방법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이딩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 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환헤지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 중 중국투자분(홍콩달러 표시 및 미국달러표시)의 평가액과 미달러 현금자산의 평가액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80%±20% 수준에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지수: MSCI BRIC Index(USD) 30% + MSCI BRIC Index(원화환산) 70%

※ 상기 참조지수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를 위한 단순 참조지수로서 투자신탁재산내 유동성 및 환헤지에 의한 성과 등의 요소는 참조지수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조지수 산출시 종가, 환율등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투자신탁 성과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은 주로 해외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 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증권, 등급이 낮은 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증권은 등급이 높은 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은 외화표시 증권 또는 하위 집합투자증권 등의 표시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해당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위험 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한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국가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 (FATCA)하의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증권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I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특정 미국인, 미국 소유의 비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판매중개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의 정의가 현행 "미국인"의 정의 보다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후강통을 통한 중국A주 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관련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은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시장 간 주식 교차거래를 목적으로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HKSCC(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mpany Limited),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와 ChinaClear(China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 Limited)가 개발한 증권 거래 및 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주식을 홍콩 소재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는 QFII와 RQFII 제도에 추가하여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위험이 수반됩니다: - 일반위험: 관련 규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 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해당 하위펀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요하는데, 그 국경간 거래 성격으로 인하여 운영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홍콩 및 상하이 시장 양쪽에서의 거래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 청산 및 결제 위험: HKSCC와 ChinaClear는 청산 연결망을 구축하였으며 국경간 거래에서의 청산과 결제를 용이하기 하기 위하여 각각은 상대방에 대한 참가자가 됩니다. 어느 한 쪽의 시장에서 발생한 국경간 거래에 관하여, 해당 시장의 결제기관은 한쪽으로는 자신의 청산 참가자들과 거래를 청산 및 결제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상대방 결제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청산 참가자들의 청산 및 결제를 완성할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 법적 소유권/실제 소유권: 증권이 외국에서 보관될 경우, 현지 증권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HKSCC 및 ChinaClear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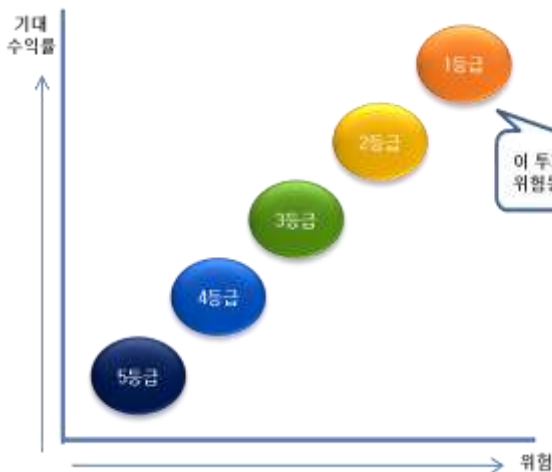
	부과하는 의무 요건과 관련된 특정 법적 소유권/실질 소유권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다른 신흥시장이나 저개발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권에 관한 법적/공식적 소유권과 실질소유권 기타 이해관계에 대한 법제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또한 HKSCC는 명의대리인으로서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을 통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실질 소유자를 대리하여 소유권을 집행하거나 혹은 소유권과 관련된 기타 권리를 집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을 통해 보유한 증권의 장부상 주주(registered holder)인 명의대리인이나 보관기관이 해당 증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을 통해 보유한 증권이 해당 명의대리인이나 보관기관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자산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혹은 실질소유자가 동 증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펀드와 보관회사는 이러한 증권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 HKSCC를 통하여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HKSCC가 보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투자자들은 펀드 및 그 보관회사가 HKSCC와 어떠한 법률관계도 가지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HKSCC의 이행이나 도산으로부터 펀드가 손실을 입을 경우 HKSCC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ChinaClear의 불이행 발생 시, HKSCC의 의무는 청산 참가자들과 체결한 시장계약에 따라 청산 참가자들의 청구를 지원하는데 국한됩니다. HKSCC는 선의로 가능한 법적 통로를 통해 또는 ChinaClear의 청산을 통해 ChinaClear로부터 미상환 주식과 현금을 회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펀드는 손실 전액을 회복할 수 없거나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을 통해 보유한 증권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회수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운영위험: HKSCC는 홍콩 시장 참가자들이 체결한 거래와 관련한 청산, 결제, 명의대리인 기능 및 그 밖의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일부 매매 제한을 포함한 중국의 규제는 이러한 모든 시장 참가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주식의 매각 시 투자중개업자에게 주식을 사전 교부해야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하여 펀드는 적시에 중국 A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쿼터 제한: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을 통한 교차거래 시스템은 쿼터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펀드가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을 통해 적시에 중국 A주식에 투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상: 펀드는 현지 투자자 보상 제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은 중국과 홍콩 시장이 거래를 위하여 개장한 날로서 양쪽 시장에서 은행이 해당 결제일에 개점한 날에만 운영됩니다. 따라서 중국시장에서의 일상적인 거래일에 펀드가 중국 A주식의 거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에서 위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 동안 펀드는 중국 A주식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관련 위험	중국 주식을 보유한 외국 투자자의 조세 지위와 관련하여는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습니다. 중국 세법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소급 적용하여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방식은 선진국들과 달리 일관되거나 투명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거주 법인이 발행한 A주식과 B주식을 외국 법인 주주가 양도할 경우에는 10% 자본소득 원천징수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현재까지 징수된 바 없으며, 그 징수 시기, 소급 적용 여부와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 후 중국 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및 기타 지분 투자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자본소득 원천징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제의 일몰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동 고시는 또한 해당 고시 이전에 실현된 이익은 원천징수세의 적용대상을 명백히 확인하였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지 기간 동안 중국 거주 법인이 발행한 A주식과 B주식의 실현 소득에 대하여 중국 자본소득 원천징수세에 대한 과세준비금을 적립할 것이나, 2014

년 11월 17일 이후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변동사유가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과세준비금을 위한 적립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향후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시장관행의 변화 징후나 중국 과세당국의 추가 지침의 발표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그 자문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중국 정부의 과세방침 발표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부터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을 통해 외국 투자자(본 펀드 포함)가 실현한 중국 A주식의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중국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사업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외국 투자자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과 유상증자 주식에 대해서는 10%의 원천징수세를 해당 상장기업을 통해 관할 중국 과세당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관할지의 조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해당 조세조약에서 더 낮은 배당소득세율을 정하고 있을 경우 과다 납부된 중국 원천징수 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과세당국에 그 차액의 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5.5.15현재)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성명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기준)	
김영민	1964	상무 책임	7	7,956억	- 한국투신 국제펀드 운용 - 한국투자증권 홍콩현지법인 - 슈로더투신(2007.8 ~) - 운용경력 19년 - 부산대 경영학 학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단, 투자신탁 최초 설정시에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수치가 기재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2014년 6월 10일자로 팀(공동)운용 체제에서 단독운용 체제로 변경되며, 상기일자로 기존의 책임운용인력만이 이 투자신탁의 운용인력으로 공시(기존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상기일자로 말소 처리)됩니다. 운용인력 최근 변동 내역 상세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개수 및 규모: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앨런콘웨이(Allan Conway)
운용자산규모	US\$ 12.0 bn('14.12.31현재)
과거 운용경력	- SISF Emerging Markets fund (2004.11 ~ 현재) - SISF BRICs fund (2005.10 ~ 현재) - SISF Latin American fund (2004.11 ~ 현재) - SISF Middle East fund (2007.09 ~ 현재) - SISF Emerging Europe fund (2004.11 ~ 현재) - SISF Global Emerging Market Opportunities fund (2007.01 ~ 현재) - Schroder EM Commodities fund (2008.04 ~ 현재)

(주1)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펀드매니저는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추이(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14.05.16 ~15.05.15	최근 2년차 13.05.16 ~14.05.15	최근 3년차 12.05.16 ~13.05.15	최근 4년차 11.05.16 ~12.05.15	최근5년차 10.05.16 ~11.05.15
펀드	10.03	-4.70	9.44	-16.27	9.93
참조지수	17.23	-7.55	9.46	-17.20	9.30

주1) 참조지수: MSCI BRIC Index(USD) 30% + MSCI BRIC Index(원화환산) 70%

주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법 제76조 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 단, 이익금은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개인이 보유한 투자신탁의 평가액에 따른 환매수수료와 실제 부과되는 환매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환매 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연간,%)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1000	
신탁업자 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200	
기타비용	0.003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0730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2.1242	-
증권 거래비용	0.1519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2.13 ~ 2015.02.12]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2.13 ~ 2015.02.12]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보증금(발행보증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부담)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보수 및 비용	316	761	1,231	2,529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 년 1 월 1 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 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해당없음
산정주기	매일 산정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chroder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 판매회사 영업시간에만 가능.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주2) 환매의 경우,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입 절차]

구분	제 1 영업일(D)	제 3 영업일(D+2)	제 4 영업일(D+3)
17 시(오후 5 시)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17 시(오후 5 시) 이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환매 절차]

구분	제 1 영업일	제 4 영업일(D+3)	제 5 영업일(D+4)	제 9 영업일(D+8)	제 10 영업일(D+9)
17 시(오후 5 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 시(오후 5 시) 이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9기(2014.02.13 - 2015.02.12)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8기(2013.02.13 - 2014.02.12)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7기(2012.02.13 - 2013.02.12)	삼일회계법인	적정

(단위: 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 목	제9기 (2015.02.12)	제8기 (2014.02.12)	제7기 (2013.02.12)
운용자산	407,269,631,738	596,813,574,912	1,018,440,486,154
유가증권	406,857,392,369	596,478,998,442	1,017,854,551,71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12,239,369	334,576,470	585,934,44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709,653,596	6,363,816,814	12,825,966,860
자산총계	412,979,285,334	603,177,391,726	1,031,266,453,01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701,834,888	6,348,613,355	12,792,509,532
부채총계	5,701,834,888	6,348,613,355	12,792,509,532
원본	454,827,833,863	723,766,209,489	1,114,605,919,317
수익조정금	-14,870,059,237	15,481,314,080	22,355,031,838
이익잉여금	-32,680,324,180	-142,418,745,198	-118,487,007,673
자본총계	407,277,450,446	596,828,778,371	1,018,473,943,482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제9기 (2014.02.13 - 2015.02.12)	제8기 (2013.02.13 - 2014.02.12)	제7기 (2012.02.13 - 2013.02.12)
운용수익	57,610,230,250	-63,600,461,974	-14,141,991,882
이자수익	105,334,194	196,200,499	318,869,678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수익(손)	57,504,896,056	-63,796,662,473	-14,460,861,560
기타 수익	6,011,061	2,693,484	8,538,777
운용비용	10,410,200,421	16,216,111,924	23,628,319,189
관련회사 보수	10,410,200,421	16,216,111,924	23,628,319,189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16,577,317	181,837,353	265,086,091
당기순이익	47,089,463,573	-79,995,717,767	-38,026,858,385
매매회전율	0.00	0.00	0.00